

**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**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36/0991

|              |    |     |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|-----|---|------------|
| 2015. 01. 16 | 신규 | 김승욱 | 2002년 12월~2005년 4월<br>CJ 자산운용<br>2005년 5월~2006년 7월<br>ING Bank<br>2006년 7월~2014년 9월<br>우리투자신탁운용<br>2014년 11월~현재<br>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 | 2109001111 |
|--------------|----|-----|---|------------|

**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 KODEX2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(주식)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5.01.01 - 2015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NH투자증권, 현대증권, 한화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제이피모간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,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, 크레디트스위스증권, 골드만삭스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에스지증권,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하나금융투자, 도이치증권, KTB투자증권, 엘아이지투자증권, 이베스트투자증권

**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**

| 변경일자         | 변경사유           | 주요 변경내용  |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변경전  | 변경후   |
| 2015. 01. 14 | 법개정등 반영 제 32 조 | ① ~ ② 생략<br>③(~)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. | ① ~ ② 생략<br>③(~)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(~)연기할 수 있다. |
|              | 법문구 명확화 제 39 조 | ②(~) 1.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(~) 1.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 |

\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 을 통해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.

**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**

| 변경일자         | 변경사유 | 성명  |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| 협회등록번호    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|------------|
| 2015. 01. 16 | 말소   | 이정환 | 1994년 12월~1999년 7월<br>동원증권<br>2000년 2월~2002년 4월<br>키움닷컴증권 리서치센터<br>2002년 5월~2005년 10월<br>동부투신운용 시 팀<br>2005년 11월~2008년 9월<br>삼성자산운용 인덱스운용팀<br>2008년 9월~현재<br>삼성자산운용 ETF 운용본부 | 2109000465 |

**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- 해당사항 없음**

**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- 해당사항 없음**

**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**

| 변경전    |      |       |      | 변경일 | 변경후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회계감사인명 | 계약기간 | 감사보수  | 계약방법 |     | 회계감사인명 | 계약기간 | 감사보수 | 계약방법 |
| 안진회계법인 | 1년   | 550만원 | 서면계약 | -   | -      | -    | -    | -    |

\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**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**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·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- 해당사항 없음

**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**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